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327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손 슬 · 전종덕 · 윤종오  
정혜경 · 박주민 · 용혜인  
남인순 · 전진숙 · 이주희  
이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인공임신중지”란 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2. 임신·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상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
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상담기관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을 “시·도지사를”로 한다.

제11조의5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인공임신중절”을 각각 “인공임신중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4.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앙상담기관 운영비

5.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지역상담기관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제2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br>-.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 <u>인공임신중절수술</u> ”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u>배출시키는 수술</u> 을 말한다. | 7. “ <u>인공임신중지</u> ”란 <u>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u> -----<br>-----<br><u>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u> 를-----.                                                                                                                 |
| 8. ~ 12. (생    략)                                                                                    | 8.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제7조의2(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u>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br>1. <u>지역상담기관의 지원</u><br>2. <u>임신·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u><br>3. <u>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상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신 설>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  
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  
적인 정보 제공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  
회 적응 지원
3.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
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임신·출산 등에 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상담기관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                                                                                                                                        |                                                                                                                                                                                        |
|----------------------------------------------------------------------------------------------------------------------------------------|----------------------------------------------------------------------------------------------------------------------------------------------------------------------------------------|
|                                                                                                                                        |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br>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br>일부개정법률                                                                                                                                                             |
|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관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br>-----<br>-----<br>-----<br>-----<br>-----<br>---- <u>시·도지사</u> 를-----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  
-----.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2조(인공임신중지 예방 등의 사업) ① -----  
-----  
-----  
-----인공임신중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삭 제>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  
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  
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 9.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ㄱ.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  
앙상담기관 운영비

5.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지  
역상담기관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6. ~ 11. (현행 제4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② -----

|                                                                                                                                                                                                                                                                                           |                                                                                                             |
|-------------------------------------------------------------------------------------------------------------------------------------------------------------------------------------------------------------------------------------------------------------------------------------------|-------------------------------------------------------------------------------------------------------------|
| <p>위에서 <u>제1항제4호부터 제6호</u><br/> <u>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u><br/> <u>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u><br/> <u>를 보조한다.</u></p> <p><u>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u><br/> <u>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u><br/> <u>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u><br/> <u>「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u><br/> <u>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u><br/> <u>처벌하지 아니한다.</u></p> | <p>-----<u>제1항제5호부터 제8</u><br/> <u>호까지 및 제10호</u>-----<br/> -----<br/> -----.</p> <p><u>&lt;삭 제&gt;</u></p> |
|-------------------------------------------------------------------------------------------------------------------------------------------------------------------------------------------------------------------------------------------------------------------------------------------|-------------------------------------------------------------------------------------------------------------|